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함.

2. 지출내역

○ 총괄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예산잔액
일반회계	1,707,626	308,312	1,399,314

○ 사업별 지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출일자	사유
계	308,312	211,055	-	97,257		
소송배상금	5,000	5,000	-	-	'04.03.22	여성회관 관련 소송 패소배상금
	43,562	43,562	-	-	'04.04.30	사하FR센터 관련 소송 패소배상금
	22,000	22,000	-	-	'04.09.06	김천항배후도로 관련 소송 패소배상금
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경비	92,940	75,114	-	17,826	'04.07.29 ~ 11.04	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경비
주민등록대사 일시사역인부임	82,566	50,593	-	31,973	'04.11.09 ~ 11.31	주민등록표 수가 증가에 따른 주민등록대사인부임
김천중앙부두앞 도로복구 해안가 및 낙동강 모래톱 재방면 해양쓰레기 수거	62,244	14,786	-	47,458	'04.11.17	태풍 "매기" 피해 복구 경비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4. 검토의견

- 2004년도 우리구 예비비 예산액은 17억762만6천원이며 이중 년도중에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억831만2천원으로 태풍 “메기” 피해로 인한 도로 복구사업과 해안가 및 낙동강 모래톱 제방변 해양쓰레기 제거 작업의 5건으로 2억 1,165만 3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9,725만 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도 이월은 없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사용 내역은 사하여성회관 소송패소 배상금 부족분 500만원, 사하FR센터 관련 소송결과 배상금 4,356만 1천원, 감천항 배후도로 관련 소송패소 배상금 2,200만원 등 소송패소 배상금 3건 7,056만 1천원과 주민등록표 수기 폐지에 따른 주민등록대사 인부임 5,059만 3천원, 감천중앙부두앞 도로복구와 해안가 및 낙동강 모래톱 제방변 해양쓰레기 수거비 1,478만 6천원이 지급 되었으며, 이는 예비비 지출요건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예비비 불용액은 구의원 보궐선거 경비정산금 1,782만 6천원, 주민등록대사 인부임 3,197만 3천원, 태풍 “메기”피해 복구비 4,745만 8천원이 각각 발생 하였으며, 주요 발생 요인은 구의원 보궐선거후 선거관리위원회 정산에 의한 잔액과 주민등록대사인부임의 경우 예비비 지출 결정후 시 재원 조정교부금이 지원되었으며, 태풍“메기”피해 복구의 경우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율(60%)산정에 의거 지출액을 결정 하였으나 공사금액 절감에 따라 구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시점부터 신중히 검토 되어야 겠습니다